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2024. 4. 1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. 4. 2. 강동오 의원 외 5명

나. 회부일자: 2024. 4. 3.

다. 상정일자: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(2023. 4. 15.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상원 의원

가. 제안이유

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발굴·조성하는 등의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안됨.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3)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- 4)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규정함(안 제5조)

다. 참고사항

1) 관계법령

가) 국민건강증진법

나) 지방자치법

2)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3) 기타

가) 입법예고 : 2024. 3. 26. ~ 2024. 4. 2.(의견 없음)

3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맨발 걷기가 심신 건강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주민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맨발 걷기 보행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.
- 이 같은 주민의 관심도를 증명하듯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앞다투어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보행로 확충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,
- 마포구에서도 현재 성미산 황토길을 운영하고 있으며, 와우근린공원과 삼개·도화소어린이공원에 황토길 조성사업이 추진중에 있음.
- 「국민건강증진법」과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여 건강 증진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장려 차원의 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자치사무로서 규정하고 있기에 도시공원 등에 맨발 산책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남이 없고 조문 체계 등 입법 내용의 정합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맨발 보행로의 대표적인 황토길 시설사업은 조성하는 것보다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 유실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

[관계 법령]

「국민건강증진법」

제6조(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,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
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」

제22조의2(신체활동장려사업)

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신체활동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
2.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 등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기반시설 마련 사업
3.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홍보사업
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신체활동장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